

○ 법정 의무경비의 가용재원에 포함여부

- 지방채상환, 교육청지원, 조정교부금, 법정적립기금 등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하여야 할 경비는 가용재원에서 제외함이 필요

○ 예비비의 가용재원 포함여부

- 예비비의 경우 총액의 1%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 법정 의무경비로 분류될 수 있어, 예비비를 가용재원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

19-3 현행 가용재원 산정 방법의 문제점

□ 산출방법

구 분	항 목
세입합계 (I)	· 자체재원 : 지방세, 세외수입, 재정보조금, 교부세 등 · 의존재원 : 국비보조금, 시도비보조금, 지방채 등
세출합계 (II)	· 경상비 : 인건비, 경상적 경비 · 의존재원사업 : 의존재원, 지방비부담금 · 채무상환 : 지방채상환, 채무부담행위 · 예비비등 : 예비비, 기타
자체사업 가용재원	· 자체사업재원(3) - 소규모사업* - 계속사업 - 투자심사제외사업 - 시군구지원사업 · 신규투자가용재원(I - II - III)

주 : *) 소규모사업은 시군구 10억미만 사업, 시도 20억원 미만 사업.

□ 주요 문제점

- 예비비, 채무상환이 가용재원에서 제외되어 있음
- 지방채가 세입에 포함되어 있어 세입이 과다계상
- 신규투자가용재원에는 지방채상환을 제외한 법정 의무경비가 포함되어 있어 과다계상
- 신규투자가용재원에 의존재원사업비(지방비부담금)가 제외되어 있어 과소계상